

원심식 송풍기 제150호

유효기간 : 2015-09-07~2018-09-06



고효율기자재

#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

- ① 업체명(법인등록번호)  
(주)플렉트그룹코리아 (110111-2461666)
- ② 사무소 소재지  
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동리 48-12
- ③ 공 장 소 재 지  
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동리 48-12
- ④ 인증기자재
-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기 자 재 명 : | 원심식 송풍기             |
| 형 식 :     | 전향익형 / 양흡입형 / 벨트구동식 |
| 모 델 명 :   | GXLF-5-040          |
| 용 량 :     | 175CMM              |
| 효 율 :     | 공칭효율 : 57.2%        |

『에너지이용합리화법』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합니다.

2015년09월07일

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



<변경사항>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재발급

<부속서류>

-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-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-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원심식 송풍기 제150호

유효기간 : 2015-09-07~2018-09-06

<부속서류 1>

◎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의 특징

1. 인증풍량 범위 : 175 m<sup>3</sup>/min
2. 정압 : 535 Pa
3. 회전수 : 967 rpm
4. 전동기 : HSX1004261(3.7 kW, 1740 rpm, 87.5%)



<부속서류>

-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-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-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원심식 송풍기 제150호

유효기간 : 2015-09-07~2018-09-06

&lt;부속서류 2&gt;

## ◎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
| 공 장 명    | 공 장 주 소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플렉트우즈코리아 | 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동리 48-12 |     |



&lt;부속서류&gt;

-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-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-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원심식 송풍기 제150호

유효기간 : 2015-09-07~2018-09-06

&lt;부속서류 3&gt;

## ◎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

| No. | 발급일자       | 내용  |
|-----|------------|---|
| 4   | 2018-04-26 | <인증내용변경> 업체명변경에 따른 재발급((주)플렉트우즈코리아→(주)플렉트그룹코리아) |
| 3   | 2015-09-07 | <유효기간연장>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 |
| 2   | 2012-06-29 | <유효기간연장> 2012.06.26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재발급           |
| 1   | 2009-09-07 | <최초인증>  |

&lt;부속서류&gt;

- 부속서 1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품의 특징
- 부속서 2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공장 목록
- 부속서 3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이력 현황

비고 : 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